

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

개정 2019.01.22. 개정 2019.04.17. 개정 2019.11.27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에 의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전문대학 졸업자들에게 계속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심화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과정명칭)

본 과정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(이하 “과정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 (설치학과 및 모집인원) <개정 2013.12.18., 2015.6.16.>

학칙 제4조(설치학과 및 입학정원)의 별표 1에 의한다.

제2장 수업연한

제4조 (수업연한)

- ① 본 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.
- ② 제과제빵학과의 수업연한은 2년, 유아교육학과, 치위생학과, 언어치료학과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.<개정 2012.09.05., 2019.01.24>

제3장 과정운영위원회 설치

제5조 (운영위원회 구성)

본 과정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.

제4장 학기, 수업기간, 수업시수 및 휴업일

제6조 (학기)

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학기로 나눈다.

- ①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로 한다.
- ②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.
-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기개시일 이전에 개강 할 수 있다.<개정 2019.04.17.>

제7조 (수업일수)

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(매학기 15주)이상으로 한다.

제8조 (휴업일)

-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<삭제 2019.01.24.>
 2. <삭제 2019.01.24.>
 3. 개교기념일
 4. 법정공휴일(대체 공휴일 포함)<신설 2019.01.24.>
- ② 휴업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정한다.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험,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.

제5장 입 학

제9조 (입학시기)

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
제10조 (입학자격)

본 과정은 동일계열 전문학사 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<개정 2012.09.05., 2014.12.16., 2015.06.16.>

제11조 (입학전형 및 허가)

- ① 입학전형은 전문대학이상 졸업(수료)증명서를 제출 받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 선발한다.<개정 2015.06.16.>
- ② 입학허가는 학칙 제15조에 의한다.<개정 2013.12.18., 2015.06.16.>

제6장 교과이수 및 수료

제12조 (교육과정)

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과별 교육과정편성과 운영은 전공심화과정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운영한다.

제13조 (수업)

수업은 야간 및 주말수업으로 운영한다.

제14조 (시험)

-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. 다만, 학기 중 중간 시험을 행할 수 있다.
- ②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, 실습, 과제물 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.
- ③ 각 교과목의 총 수업시수의 1/4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은 미취득(F)으로 처리한다.

제15조 (성적평가)

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을 만점으로 출석상황, 평소 학업성적,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하며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.

평점 방법		
배 점	등 급	평 점
100 - 95	A+	4.5
94 - 90	A	4.0
89 - 85	B+	3.5
84 - 80	B	3.0
79 - 75	C+	2.5
74 - 70	C	2.0
69 - 65	D+	1.5
64 - 60	D	1.0
59 - 0	F	0
불 계	P	

제16조 (졸업)

- ① 총장이 정하는 각 학과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제2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학칙에 의거 학사학위증서를 수여한다.<개정 2017.11.28.>
-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전적대학 학점을 포함하여 12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. <개정 2017.11.28., 2019.01.24>

- ③ ②항의 전적대학 학점인정범위는 2년제 학과는 70~80학점, 3년제 학과는 100~110 학점까지 한다.<신설 2017.11.28., 개정 2019.01.24., 2019.11.27.>

제7장 위원회

제17조 (위원회)

- ①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를 둔다.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.
- ②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에 교육과정의 연구, 개발, 운영을 심의하기 위해 전공심화과정 교과과정편성위원회를 둔다. 전공심화과정 교과과정편성위원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학칙준용)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또는 학칙시행세칙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8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12.1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12.1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06.1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5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11.2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졸업에 따른 경과조치)

제16조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9.01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4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11.2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